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 10호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3.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 안 이 유

- 주요 군정현안이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 각종 사업의 개선점 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견 제시 및 정책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향후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조항을 명문화하여 5분 자유발언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 또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표결방법’에 대해 전자투표를 조문의 내용에 추가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조항 신설(안 제28조의2제4항)

- 발언내용에 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15일 이내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나. 조항 수정(안 제41조제1항, 안 제45조제1항제12호)

-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표결방법으로 추가함

3. 참 고 자 료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24. 3 .13. ~ 2024. 3 .18.(5일간)

라. 기 타

- 1)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2)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거수 표결”을 “거수, 전자투표”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2호 중 “기립,거수”를 “기립, 거수, 전자투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군수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u>거수</u> 표결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삭제 ③ (생략)	제41조(표결방법) ① ----- ----- <u>거수, 전자투표</u> ----- ----- . ----- ----- ----- ----- .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11. (생략) 12. <u>기립,거수</u> 표결, 이의유무의 찬반 의원 또는 기권 의원 성명 13. ~ 15. (생략) ② (생략)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기립, 거수, 전자투표</u> ----- ----- 13.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임실군의회 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